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 취소

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
2. 부과취소사유 : 납세자의 세목 착오 납부(종합소득세분으로 납부)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부과취소건수	당초세액	취소세액	차 액
1	59,987,090	59,987,09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 결정서 1부
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부과취소 내역서 1부
 3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분) 국세청통보자료 및 납부상세내역 1부. 끝.

주무관 **박병우** 지방소득세2팀 **윤미라** 세입관리팀장 **이정현** 기획경제국장 06/16 **김용운**

협조자